

다음과 같이 計算될 수 있다.

$$\text{예측재적} = 286.61 \times \frac{205.81}{222.15} = 265.53 \text{m}^2$$

가 된다.

5. 生長量의豫測

위의 事例에서 收穫表上의 40年일때 平均生長量이 7.17m^3 이라면

$$\text{예측生長量} = 7.17 \times \frac{205.81}{222.15} = 6.64 \text{m}^3$$

됨을 알수있다.

結 言

위와같이 收穫表는 各種因子를 알수있고豫測할 수 있는 表이다.

그러나 現在의 立木密度가 不法正인 林分이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撫育法 如何에 따라 어떤期間이 경과하면 法正林에 가까워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進行速度는 未知數이며 現在로서는 確實한 豫想은 할수 없고 다만, 現在의 狀態로서 表와對比하면서 推測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 ★

營林計劃 林地 総土稅 解決

- 과오납된 세금 환수 받도록 -

을해 처음으로 실시된 토지종합세가 당국의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인하여 일부 시·군에서 혼선을 빚고 영림계획 인가지에 대하여 잘못 부과된바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에서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중인 임야」에 대한 용어 해석상의 차이로 일부 시·군에서 혼선을 빚고 분리과세로 해야할 영림계획임지가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는 등 물의를 빚은바 있었다. 이에따라 본회

와 산림청은 내무부와의 꾸준한 협의 끝에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라 함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림, 육림, 벌채등 사업이 진행중인 영림계획인가 구역내의 모든 임야는 사업중인 임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구제받게 되었다.

이로써 기히 세금을 납입하여 과오납되었거나 이의 신청중에 있는 해당 임지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부분을 환수받는 등 적절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